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한강공원의 생태적 보전과 시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강공원 이용시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한강대교 상부에 있던 직녀

카페를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전망호텔 운영을 앞두고 있어 한강공원 휴양시설 이용료에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한, 한강공원 내 자전거대여소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의 구체성과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별표2 제3호 공원시설 이용료에 휴양시설에 숙박시설(전망호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 제3호 신설)

나. 별표2 제6호 유희시설에 자전거대여소 기준 및 이용료 부분에 다인승 및 전기동력 자전거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2 제3호 수정)

아무쪼록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체성과 명확성 및 실효성을 높여 서울특별시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준수를 견인하고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과 실행 책무뿐만 아니라 이용시민의 책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